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특위 핵심의제 제안

우리가 바라는 복지국가

-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
- 자유와 정의, 사회적 연대가 기초가 되는 나라
-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나라
- 국민의 복지를 사회권으로 인정하는 ‘사회복지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나라

복 지 국 가 실 천 연 대

3대 제안 의제

총
기
조

사회복지**국가책임**제 실현

〈실현과제분야〉

〈구현 공약〉

예
산

사회복지예산
OECD 국가
평균 수준 증대

- ◇ OECD 국가 평균으로 사회복지예산 증대

사
업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 ◇ 공공이 책임지는 국민 복지서비스 보장
-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프라 공공성 강화
-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공공성 강화

인
력

사회복지인력
좋은 일자리 확보

- ◇ 적정 인력배치기준 마련 및 비정규직 철폐
- ◇ 교대제 노동형태 기준 개선
- ◇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급여 현실화 및 지원 확대
-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노동환경 개선 위한 지침 마련
- ◇ 전국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단계별 완성 로드맵 적용

사회복지예산 OECD 국가 평균 수준 증대

1 문제 현황

□ 한국은 2019년 GDP대비 사회 지출이 12.2%로 OECD 평균 20%의 절반 수준

○ 시장 중심 복지정책 실시하는 미국(18.7%), 서유럽 국가 프랑스(31.0%), 북유럽 국가 핀란드(29.1%), 덴마크(2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출처: OECD.Stat(<https://url.kr/glyra3>) 사회 지출 데이터

○ OECD 38개 회원국 중 경제 성장률 1위(보건복지부, 2020), GDP 순위는 직전 12위에서 9위로 예상하고 있으나, 사회 지출은 28위로 하위권(OECD.Stat)

〈2019년 OECD 주요국 사회 지출 규모 비교〉

한국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독일	영국	미국	OECD평균
12.2	31.0	29.1	28.9	28.3	25.9	20.6	18.7	20.0

출처: OECD.Stat(2019년 기준)

□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는 복지재원 확보 불충분

－ 낮은 급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적 확대,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 양산,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할 복지예산 확대 필요

2 개선 공약

◇ OECD 국가 평균으로 사회복지예산 증대

- 예산 증대 위한 집권기간 내 로드맵 수립
- 사회복지예산 확보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등 세수 확충 방안 및 재원확대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

1 문제 현황

□ 복지사업 민영화, 시장화 정책 한계

○ 팬데믹 상황에서 확인한 사회복지 공공성

- 간병살인,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 부족, 격차 확대 등 양상 심화
- 사회복지 분야 주요 서비스, 인프라, 및 인력에 공공성 부재 확인

○ 국민 체감도 향상 위한 공공화 방향 왜곡 양상

- 과도한 민간·시장 의존성*에 따른 사회복지노동 질 저하 등 서비스 공급체계 왜곡

*바우처 제공사업, 노인장기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 분야 서비스 공급의 민간 혹은 영리 의존성 심화

- 공공 설립 인프라도 민간위탁* 일반화

*공공은 민간운영 시설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수준: 국민 서비스 욕구 충족에 대해 책임 회피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파편화로 인한 복지욕구 통합지원에 한계

□ 국민복지 욕구에 맞춘 통합적 복지인프라 부재

○ 사회복지프로그램 파편화

○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책무성은 공공에 있음에도 민간 위탁, 시장 의존성 증가

-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은 공공(지방자치단체) 업무임에도 책임성 불명확

2 개선 공약

◇ 공공이 책임지는 국민 복지서비스 보장

-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전국 조기 안착
- 공공 직영 지역별 응급지원 복지서비스 체계 재편 및 확대
-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주민)생활기본권 설정
-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 사회복지 대응성** 강화

*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확인된 소득보장 및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공공의 즉각적 보장책임 구현

-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전국민 사회보장 실시
- 건강보험 체계 혁신을 통한 상병수당제도 전면 시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프라 공공성 강화

- 국공립 인프라 신규 확충
- 주요 사회복지 영역에서 공공설립-공공운영 인프라* 비율 30% 이상 확보

*장기요양, 보육, 장애인 지원, 방과후 돌봄, 지역사회복지 일반 등

1 문제 현황

□ 전문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사회복지노동시장

- (쉬운 자격진입) 교과목 이수만으로 쉽게 취득 가능한 국가 자격*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 왜곡**

* 20년간 자격발급량 90배 폭증(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 가능한 2급 기준, `00년 1만2천여건→`21년 108만여건)

**쉬운 해고와 쉬운 고용 가능으로 전문성은커녕 업무숙련도에도 지장 → 비정규노동 증가 및 서비스 질 저하 → 사업장 노동쟁의 증가

- (어려운 노동현장)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노동 실시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노동강도 및 불합리한 인력배치기준 등 구조적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 개정법 적용

* `18.2.28. 개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취지

**법령 위반 발생, 노동자 임금감소 및 복지대상자 돌봄서비스 공백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과 역할에 부정적 영향

- (차별적 임금시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사회복지시설 인력 임금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유형별로 차별적 기준*이어서 인력 채용 및 근속년수 등에 악영향

- **차별기준 현황:** (유형별 차별기준) 지방이양시설은 단일 기준* 제시, 국고지원시설은 개별지침** 배포. (지역별 차별기준) 현행 서울, 인천, 제주 등 3개 지역 개별 기준 존재하며, 이 3개 지역도 단일 기준 아닌 지역마다 시설 유형 포함 정도 등이 다름. (소관부처별 차별기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따른 개별 기준도 존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정신건강사업안내」, 「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아동분야사업안내」,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 「자활사업안내」 등 9종

2 개선 공약

◇ **적정 인력배치기준 마련 및 비정규직 철폐**

- 개정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정원 외 인력의 수요를 감안한 현실화된 인력배치기준 재설정 및 비정규직 철폐

◇ **교대제 노동형태 기준 개선**

-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른 연중무휴가동이 가능한 4조 3교대제 등 4조 이상의 교대제 전면 시행을 통한 교대제 생활시설 인력 노동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급여 현실화 및 지원 확대

-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시간외수당에 관한 지침 마련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 강화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노동환경 개선 위한 지침 마련

- 4명 이하 시설의 경우도 재무·회계관리, 인사관리, 문서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 수반
- 특히, 교대제를 시행하는 시설은 2조격일제나 2조2교대 근무 등 열악한 노동환경
- 이에 상시 노동자 4명 이하 소규모 시설 인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

◇ 전국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단계별 완성 로드맵 적용

- 사회복지시설 인력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보건복지부장관)

(‘23) ①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유지(지방이양시설)

② 현행 국고지원시설 14개 개별 가이드라인 일원화 준비

(1그룹-아동영역 외) 현행 호봉제 적용 그룹 간 통합

(2그룹-아동영역) 현행 호봉제 미적용 그룹 간 통합

(‘24)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유지(지방이양시설)

현행 국고지원시설 14개 개별 가이드라인 1개 기준으로 통합

(‘25) 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 등 2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개 기준으로 통합

○ 지역별 생활임금 반영 기준 마련(지방자치단체장)

(단서) 보건복지부장관 제시 ‘사회복지시설 인력 임금적용 기준’을
하회할 수 없도록 함

◇ 사회복지서비스 공무원 근로환경 및 교육체계 개선

○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 사회복지 관련 부서 관리자 사회복지직 전면 배치 및 이상 비율제 도입

○ 사회복지직 공무원 보수교육 체계 마련